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신고 방법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드립니다.

글 편집실

Q

50인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안전관리자입니다. 이곳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법행위, 안전사고, 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사업주가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고 신고를 절대 할 수 없게 합니다. 게다가 신고자를 찾아내 불이익을 줄 고압적인 분위기라 아무 행동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장을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산업현장의 위험상황 및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등 법적 유권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minwon.moel.go.kr)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신고자 불이익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2항에 의거 하여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 또는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타인이 이를 발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리신고 근거 법령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 발설 금지에 관한 법령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한 근거 법령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6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